

■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
법률 시행령 [별표]

과태료의 부과기준(제4조제1항 관련)

법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급한 금융거래 및 그에 따른 지급·영수 금액	과 태 료
1억원 이하	500만원
1억원 초과 내지 5억원 이하	1,000만원
5억원 초과	1,500만원